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김선교·구자근·김성원

김정재 · 김상훈 · 이헌승

박수민 · 최수진 · 박준태
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,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.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.

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'부양의무자 기준'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(부모, 자녀, 사위, 며느리)까지 포함한 가족들 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,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 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 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(안 제14조 등).

법률 제 호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가구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"을 "가구원은"으로 한다.

제14조의3제1항 중 "부양의무자에"를 "가구원에"로, "부양의무자의"를 "가구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한다.

제14조의4제1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 항 중 "부양의무자의"를 "가구원의"로 한다.

제19조 전단 중 "부양의무자가 없는"을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는"으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4조(생활조정수당) ① 국가보 제14조(생활조정수당) ① -----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 ----대통령령으로 정 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 하는 바에 따라 본인 및 그 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---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. <후단 신설> 이 경우 가구원의 범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4조의2(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제14조의2(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청) ① (생략) 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(부양의 ----가구원은-----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생 략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제14조의3(조사·질문 등) ① 국 제14조의3(조사·질문 등) ① ---

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 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(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 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 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 수 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 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 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 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 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 수당 수급자와 그 <u>부양의무자</u> <u>가</u>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 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

<u>가구원에</u>
가구원의
② (현행과 같음)
③
가구원이

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 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 다.

④ (생 략)

제14조의4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 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 하여 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25조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 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 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

④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4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
가구
원이
<u>tt </u>
2

수당 수급자와 그 <u>부양의무자</u>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요청할 수 있다.

③ ~ ⑦ (생 략)

제19조(양로지원) 독립유공자와 기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 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여 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

		- <u>가구원의</u> -			
	③ ~ ⑦ (현행과 같음)				
제	19조(양로지원)				
	<u>부</u> 양의무자(부	 -양의무가	있는		
	<u>부양의무자(부</u> 배우자, 부모, 자				
	배우자, 부모, 자	녀 및 그	배우		
	배우자, 부모, 자 자를 말한다. 이	녀 및 그	배우 없는		
	배우자, 부모, 자 자를 말한다. 이	·녀 및 그 하 같다)가	배우 없는		
	배우자, 부모, 자 자를 말한다. 이	·녀 및 그 하 같다)가	배우 없는		
	배우자, 부모, 자 자를 말한다. 이	·녀 및 그 하 같다)가	배우 없는		
	배우자, 부모, 자 자를 말한다. 이	·녀 및 그 하 같다)가 	배우 없는		

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	
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	
수 있다.	
	<u>.</u>